

#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4. 14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4월 3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8년 4월 4일
- 다. 상정 및 심사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8. 4. 14)  
상정, 심사, 수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임 정 식

### 가. 제안이유

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기를 년2회 지원에서 매월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육성기금 운용심의회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을 소관국장으로 하고 서면심의 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 개정 골자

-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한 적용 법조문 변경(제1조)
  -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 위임법규의 적용법규 변경으로 “지방자치법 제13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개정함
-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(제7조 제2항)

-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시기를 매월 지원으로 변경,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회를 매월 개최해야 하는 바,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“부구청장”에서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변경하고자 함

○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방법 중 서면심의 방법 추가 (제7조 제5항)

- 융자신청자의 신청총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,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·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**

○ 동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기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융자액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필요한 시기에 순발력있게 개최하고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“부구청장”에서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향 조정하고,

안 제7조제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, 기타 동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변경하고 동 조례에 인용된 법령에는 낫표(「)를 사용하도록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**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